

4. 都市再開發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359號 1997. 4. 25

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도시재개발법이 개정(1997. 1. 13, 법률 제5288호)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 및 공원의 범위를 재개발구역지정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·공시된 너비 20미터 이상인 통과도로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정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47조 본문중 “법 제46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46조제2항 본문”으로 하고, 동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
령이 정하는 도로·공원”이라함은 당
해 재개발구역의 지정당시 도시계획으
로 결정·고시된 도로·공원으로서 다
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너비 20미터이상인 통과도로로서
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

2.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(어린
이공원을 제외한다)

제52조제1항 중 “공인회계사법 제5조”를
“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”으로, “동법
제12조의 2”를 “동법 제2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